

이탈리아의 石油政策

1. 石油市場의 구조

이탈리아는 1차에너지 공급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石油가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3%(1980년)로서 西歐 제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내 원유수요중 95% 이상을 수입원유에 의존하고 있다.

石油製品의 수요패턴은 重油비율이 약 44%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국내 石炭자원이 매우 빈약하여(석탄석어 약 7%) 火力發電에서 차지하는 石油화력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石油市場의 구조적인 특징으로서는 국내 석유수요량에 비해 정제능력(1981년초 약 400만배럴/일)이 과잉이라는 것이다. 이 과잉능력의 존재는 제품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80년의 경우 국내수요의 20%를 수출하였다.

石油市場은 국제기업과 민족계기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정제설비 능력에 있어서 국제기업의 점유율은 다른 유럽제국 만큼 높지 않다. 精油工場의 건설허가 제도가 철폐된 60년대 초부터 이탈리아 獨立系 회사들이 정제부문에 대거 진출하였다. 현재 국내정제능력의 65% 정도를 이 독립계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메이저들의 정제능력은 19%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6%는 1953년에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ENI(Ente Nazionale Idrocarburi : 이탈리아 국영회사)가 차지하고 있다(ENI의 실제적인 사업은 AGIP, SNAM 등 11개 子會社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독립계 회사들은 原油를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原油를 제 3자 계약이나 직접거래 또는 현물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석유제품의 국내판매

못지 않게 수출을 중요시 하고 있다.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ENI의 판매회사인 AGIP SPA와 IP(Industria Italiana Petroli)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Esso, Mobil, Socal, Gulf, Texaco, Amoco 등 메이저系와 Petrofina SA, CFP 등 유럽기업이 전체에서 3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1%를 이탈리아의 獨立系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Shell과 BP는 19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석유제품가격을 낮게 책정하자 철수하였다. 그러나 1981년 이후 Shell이 IP, BP가 Monti 그룹의 일부 주식을 각각 취득하여 이탈리아 시장에 실질적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또 다른 석유시장의 특색은 휘발유의 수요중 고급 휘발유가 9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며(주로 옥탄價의 규격관계), 전국 3만9천여개 주유소중 80-85%는 석유회사 자선들이 직접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2. 石油政策의 전개

이탈리아의 기본 석유정책은 1933년에 제정된 石油法을 비롯해 ENI法, 대륙봉 석유광업법, CIP(정부 물가위원회)규제 등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이 제석유관련법의 기본목적은 (1) 적정가격으로 충분한 양의 원유 및 제품의 공급을 확보(2) 정제처리량에 대해 국내수요에 맞도록 규제(3) ENI 및 민간기업의 육성강화(4) 가격규제(5) ENI와 산유국간의 탐광촉진 및 원유도입 장기계약 체결의 추진 등에 있었다.

1970년대에 와서 정부는 ENI의 역할을 국내 및

국제석유 시장에서 강화, 주요 精油센터와 석유제품 수출국으로서 이탈리아의 역할을 유지, 석유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는 등의 목표를 내세우고 1977년까지 이탈리아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석유제품 가격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1977년말부터 세계석유시장이 비교적 안정을 되찾자 가격결정 기구인 CIP는 전반적인 가격규제를 폐지하고 3중 가격제를 도입하였다. 즉, 휘발유, 경유, LPG, 등유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규제하에 두고, B-C油, 제트油, 나프타,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석유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가격을 CIP가 감시만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출용 전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화 하였다.

가격결정 정책이 있어서는 기본적인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CIP는 적당한 인상폭을 품목별로 결정하는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CIP는 국내 휘발유값이 EC 제국중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보다도 국내 승용차 소유자들이 휘발유가격 인상에 아주 민감하다는 점을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농어업용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취해 가격을 일반용 제품보다 낮게 책정하고 공업용 灯油和 輕油의 실수요자 가격도 별도의 가격수준이 적용되었다.

한편, 국내 石油需給에 있어서는 국내시장가격과 現物市場 가격간의 차이에 따라 국내수급이 큰 영향을 받아 때로는 특정제품의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공급면에서 정부의 가격통제에 의해 국내가격이 저수준으로 억제되기 때문에 現物市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독립계 석유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수입량의 격감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키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국영석유회사인 ENI의 AGIP가 적극적으로 D-D 原油의 수입을 확대하도록 한다.

—輕油和 LPG를 수입할 때 생기는 수입가격과 국내정제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 3,500억 리라의 보조금을 휘발유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輕油의 공급부족에 대해서는 규격의 개정, 국외로 나가는 트럭의 급유제한, 탄력적인 가격개정을 실시한다.

—수출정유공장의 수출신청 허가방식 등을 도입하고 있다.

3. 국내석유제품 價格制度

(1) 가격통제의 원리

정부에 의한 石油製品 가격통제는 1944년 국민 생활에 대한 중요한 財源 및 서어비스의 가격을 통제한다는 법령을 공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수입 패리티방식(Parity System, FOB Abadan)으로 통제가격을 산출하였으나, 1971년에는 코스트 전가 방식으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1980년 유동적인 석유정제에 대응하기 위해 EC Market 방식을 채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초 1944년의 가격통제는 휘발유, 輕油(자동차용, 난방용)에 한해서 실시하였으나, 그후 점차 다른 油種도 추가되어 1970년대 초기에는 거의 全油種이 통제받게 되었다. 그러나 1978년초 증유, 나프타 등이 정부 결정 최고가격에 의한 직접통제에서 제외되고 승인형식의 감시가격으로 바뀌었다.

현재 가격통제하에 있는 것은 휘발유, 輕油(자동차, 난방용), LPG(자동차용, 가정용)이며, CIP가 전국의 정유공장, 저유소가격 및 소비자 가격의 최고액을 결정 고시한다. 단, 난방용 輕油에 대해서는 CIP는 정유공장, 저유소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소비자 가격은 각 지방의 물가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기타 油種에 대해서는 CIP의 감시하에 두고 있으며, 石油會社는 가격인상시 마다 CIP에 신청을 하고 CIP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油種이 어떠한 형태로는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價格決定방식

① 1979년 말까지의 방식

석유회사의 보고에 의거 CIP가 이탈리아의 평균 코스트를 산출하여 最高價格을 결정한다.

原油費: 모든 석유회사는 매월 自社의 처리원유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CIP에 제출한다. CIP는 ENI의 정보와 타국의 평균원유대를 고려하여 평균 단가를 산출한다. 자국의 화폐단위 리라로 환산할 때는 前週의 평균시세를 사용하여 매주 산출한다.

精製費: 모든 석유회사는 年 1회 정유공장별로 지출항목별 자료를 CIP에 보고한다. CIP는 이

것을 심사하여 마진을 고려한 평균 코스트를 산출한다.

流通코스트: 주요 3社가 매년 CIP에 보고한다. CIP는 심사 후 마진을 포함시킨 평균 코스트를 산출한다. 가격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 코스트가 2% 이상 변동할 경우와 1-2%의 변동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실시한다.

② 현행방식

주요 5개국(英國, 西獨,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가중평균 정유공장출하가격과 동일수준이 되도록 국내 제품가격을 결정한다.

〈산출방법〉

매주 EC委員會에서 발표하는 국별, 제품별 소비자 가격에서 각국의 流通코스트와 이윤을 제외하고 각국의 수요 패턴을 고려하여 이탈리아에서 통제되고 있는 제품의 가중평균 정유공장 출하가격을 산출한다.

이탈리아의 평균수율로 산출된 규제제품의 정유공장 출하가격을 5개국 평균치와 동일수준으로 정한다. 유종별 배분(收率이 다르기 때문에 각제품의 가격은 동일할 수 없다)은 5개국의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流通코스트의 산출은 구방식(주요 3사의 보고에 의거)과 같다.

〈최고가격의 개정〉

가격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연 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5개국 평균치와 1% 이상 차이가 있으면 5개국 평균치로 개정한다.

-4% 이상의 차이가 생기면 즉시 5개국 평균치로 개정한다.

-5개국 평균치와 2% 이상의 차이가 있고, 산유국의 공시가 인상에 따라 이탈리아의 原油代가 2% 이상 상승하면 5개국 평균치로 개정한다.

〈감시하에 있는 제품가격〉

유럽 5개국 평균 수준의 가격이면 승인된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할 상황하에서는 보다 비싼가격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은 가격수준이나 石油會社의 수익상황을 인접 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石油의 수급안정 확보를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유회사들이 감시하에 있는 제품에 보다 높은 코스트를 배분함으로써 유종간의 가격체계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완전자유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부는 당분간 인접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통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석유업계로서는 최고 가격제를 폐지하여 감시가격제로 이행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自由化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현행 방식을 받아 들이고 있다. * 〈주간석유에너지정보〉

